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- 호

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8월 5일  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##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정의(定義) 규정을 상표의 핵심적 의미와 그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상표법」(법률 제14033호, 2016. 2. 29. 공포, 2016. 9. 1. 시행)이 전부개정되고,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다자기구팀, 계측분석심사팀 등 12개 팀의 존속기한 도래함에 따라 해당 팀(과) 명칭 등을 정비하며, 서울사무소 관리과장·출원등록과장 보임 근거 및 기록연구관의 복수직급 규정을 수정하고, 총액인건비제로 조정된 하위직을 원상복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총액인건비제 팀 등 명칭 정비(안 제11조제2항·제4항·제5항·제7항·제8항, 제22조제2항)

- (상표디자인심사국) 복합상표심사팀 → 상표심사3팀
- (상표디자인심사국) 서비스표심사과 → 상표심사4과
- (상표디자인심사국) 국제상표출원심사팀 → 국제상표심사팀
- (상표디자인심사국) 디자인심사과 → 디자인심사1과
- (상표디자인심사국) 복합디자인심사팀 → 디자인심사2팀

나. 서울사무소 관리과장 및 출원등록과장 4.5급 보임 근거 마련(안 제18조제2항)

다. 기록연구관 복수직급 규정 정비(안 별표2)

라.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하 하위직에 대한 원상복귀(안 별표4, 별표6, 별표8)

## 3. 의견제출

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6년 8월 11일까지** 통합입법예고시스템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(참조: 창조행정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보내실 곳

○ (우편번호: 35208)

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

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

전화: 042)481-5054, Fax: 042)472-3504

이메일: [hyunjinyun@korea.kr](mailto:hyunjinyun@korea.kr)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(<http://www.kipo.go.kr>) 「책자/통계-법령 및 조약-입법예고」를 참조하시거나, 특허청 창조행정 담당관실(전화 042-481-5054, 팩스 042-472-350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